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14일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정 *진	정 *진 1979-05-17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 (공세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10-28